

지역별 안내

담당지역	전화번호	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
과천, 광주, 군포, 성남, 수원, 안성, 안양, 오산, 용인, 의왕, 평택, 하남, 이천, 여주, 양평, 가평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의정부, 포천	031-590-0614	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서울, 인천, 고양, 광명, 김포, 부천, 시흥, 양주, 파주, 연천, 안산, 화성	02-3153-0520	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부산, 울산, 경상남도	051-366-3711	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대구, 경상북도	053-580-7509	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대전, 세종, 충청남도	042-939-2397	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충청북도	043-219-6433	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
광주, 전라남도	062-949-0311	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제주특별자치도	064-722-8516	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
강원도	033-240-9533	강원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전라북도	063-279-0807	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

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?

국가의 중장기·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별로 순환경제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[관련근거 :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4조, 제15조, 제16조 등]

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

| 국가 순환경제목표 달성 |

국가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·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·관리



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



시·도 순환경제 성과관리

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·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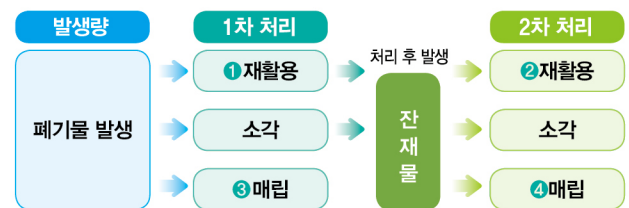
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

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 순환경제 목표 등을 고려한 순환경제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·부여 받고,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

순환경제 성과관리 개념 및 성과지표

| 순환경제 성과관리의 개념 |

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에 따른 성과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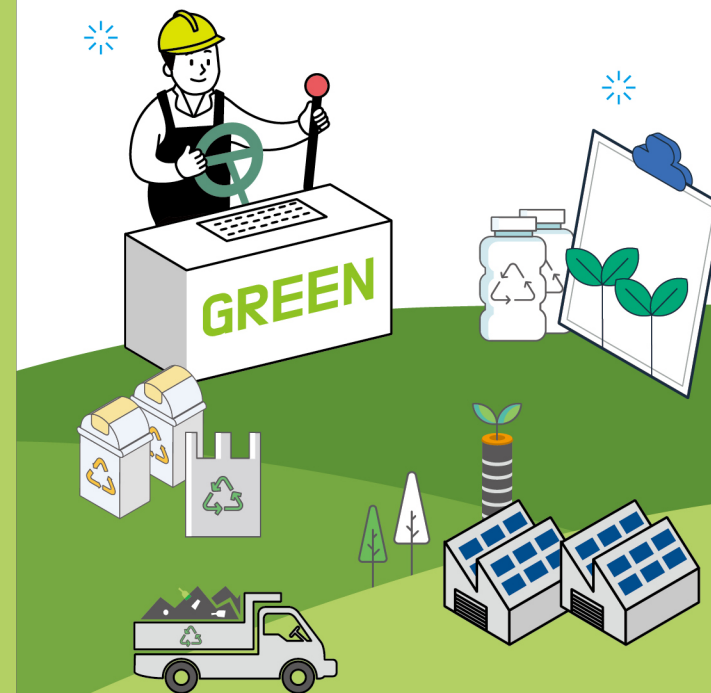
| 순환경제 목표 성과지표 |

폐기물발생감량률 (2025년부터 시행)	$\frac{\text{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}}{\text{기준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}} \times 100$
최종처분율	$\frac{\text{최종처분량(톤)}}{\text{폐기물발생량(톤)+순환자원 인정량(톤)}} \times 100$
순환이용률	$\frac{\text{실질재활용량(톤)+순환자원 인정량(톤)}}{\text{폐기물발생량(톤)+순환자원 인정량(톤)}} \times 100$

자르는 선

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

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



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

|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|
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
-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,
또는 지정외 폐기물 1,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
(단, 건설폐기물은 제외)



[T-2년도] 성과관리 대상자 선정·공고(6월)

한국환경공단

- 대상 사업자 조사
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기준 업종 및 배출량 조사
- 대상 사업자 선정 · 공고(6월말)
공단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마루 시스템 등에 공고 및 문서 통지

사업자

-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
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


자르는 선

[T-1년도] T년도 순환경제목표 설정·이행계획 제출

| 목표설정 기본원칙 |

대상자별 단계적으로 국가 순환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

|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제출 |

① 기준실적* 자료 제출		
사업자	•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(최근 3개년도) 제출	3월말
한국환경공단	• 실적자료 검토·확인 → 보완 요청(사업자)	3~4월

※기준실적 :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순환이용 실적

② 목표설정 및 부여		
한국환경공단	• 목표설정 계획 수립 (순환경제목표는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 적용)	~9월

환경부	• 목표협의 및 확정(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자단체)	9월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한국환경공단	• 대상사업자별 목표 통보	9월말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

사업자	• 목표부여 이의신청	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③ 목표이행계획 제출		
사업자	• 순환경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목표 달성 이행 방법, 폐기물 감량계획 등	12월말
한국환경공단	• 실적자료 검토·확인 → 보완 요청(사업자)	익년도 1월

[T년도] 순환경제목표 이행

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순환경제 성과지표
(최종처분율, 순환이용률, 폐기물발생감량률)의 목표 달성을 위한
폐기물 원천 감량과 자원순환 노력 이행

[T+1년도] 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

사업자	목표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	3월말
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

한국환경공단	• 이행실적 검토·확인 : 목표대비 달성도 등 • 이행실적 평가 결과 보고	6월말
--------	--	-----

환경부	순환경제목표 이행 명령 등
우수	• 우수 성과관리 대상자 선정 • 재정적 · 기술적 우선 지원 • 정부포상시 우선적용 등
미흡	목표 미달성 및 미이행 등에 관한 조치 • 목표 미달성 시 다음연도에 가산 적용 및 기술진단 · 지도 • 실적자료, 이행계획, 이행실적 제출 등 미이행시 명단공개

추진절차

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자		
T-2년도 6월말	대상공고	
T-1년도 3월		실적자료 제출
7월말	목표협의 (산업통상자원부, 사업자 단체) 자료검증/ 목표(안) 수립	
9월말		목표설정
12월말	계획검토 확인	이행계획서 제출
T년도 1월~12월	목표이행	
T+1년도 3월		이행실적 제출
5월말	이행실적 평가	
	우대 등 후속조치	